

노·무·상·담

공인노무사 강경만



Q 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

A '임원'이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의 사업경영 담당자(경영자)를 말하는 바 회사의 임원이 근로자인지의 여부는 최고경영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는지 여부 즉, 사용종속관계 등에 기초하여 판단함.

는 것은 업무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공적으로 증명하고 제3자에게 이를 알리기 위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증거가 될 수 있음.

Q 임원을 근로자로 판단하기 위한 필요조건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A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게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게 의하여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보수나 근로자채의 대상적 성격과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의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경우에도 그 형식만을 따질 것이 아니라 위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한국중합노무법인합술사사무(031-877-7582-3)

법·률·상·담

변호사 김제동



Q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의 효력】

A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고 대가를 받기로 한 각서의 효력은 피의자 B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자신이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하여 B가 시키는 대로 허위진술 할 것을 약속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하는 각서를 받았습

다. 그 후 B는 수사기관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B의 약속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는바, 이 경우 B에게 각서의 내용대로 대가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그런데 위 사안에서와 같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진술을 해주는 대가로 작성된 각서가 유효한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

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

사회질서적 성격을 띠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

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며... "라고 하였으며(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판결).

또한,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으로 진술하면서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에 그 허위진술행위가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이러한 행위 자체는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국가사회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것이니, 그 급부의 상당성 여부를 판단할 필요 없이 허위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의 약정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라고 하였습

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71989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참고인 B의 허위진술행위가 비록 범죄행위를 구성하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B가 B를 상대로 국가사회의 일반적인 도덕관념이나 공공질서이익에 반하는 내용의 위 각서에 기한 약정금청구를 하여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 김제동 변호사(031-829-9311)

전·기·상·식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 대표이사 안병호



검정으로 인하여 절할 경우에는 3개월 한도로 한전에서 무상으로 대어 해드립니다.(표)

◆시간대 구분(산업용(병) 및 일반용(을))

Table with 4 columns: 시간대별, 여름철, 봄·가을철, 겨울철. Rows include general and industrial time slots.

경기북부전기안전관리공사(031-541-9111)

Q 【전자식계기 설치대상】 시간대 구분계기와 전자식계기의 설치 대상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겠어요?

A 시간대구분계기(3종계기)의 설치 대상은 전기사용의 실적이 시간대별로 구분되어 계량되는 전기기

로써 산업용전력(을)·(병), 일반용(을)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한 전에서는 시간대구분계기 설치 고객을 전 고압고객에 대하여 전자식으로 기록되어 계량되는 전자식 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고객소유 3종계기가 계기고장 및

의·학·상·식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소아과장 이종승



이 발생하거나 이전의 두통이 심하게 된 경우에 약물 중단 후 2개월 이내에 두통이 소실되거나 이전 수준으로 감소하는 경우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개, 목, 눈, 코, 부비동, 치아, 입 또는 기타 안면 및 두개 구조물의 질환에 기인한 두통은 골수염, 다발골수종, 파제트병 등의 두개골 질환, 경추 및 주위 조직의 병변 등의 목질환, 녹내장, 굴절 이상, 사시, 안 염증성 질환 등의 눈질환, 귀질환, 부비동염, 치아, 턱 및 관련 구조물, 턱관절 질환에 기인한 두통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통 환자에서 비정상적인 신경학적 징후가 동반될 때, 두통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때, 두통 발생시 시력장애가 동반될 때, 두통에 의해 잠에서 깨어나거나 깨어나자마자 두통이 발생하는 경우, 간질 발작이 동반되는 재발성 두통, 소아에서 발생하는 군발두통, 국소 신경학적 이상 증후군을 발생하는 두통, 기침에 의해 유발되는 두통, 학습 장애나 성격 변화 그리고 성장 지연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 영상학적 검사로 고려해야 하였습니다.

☞ 포천병원(031-539-9114)

소아두통(3)

비협관성 두개내 질환에 기인한 두통은 뇌압 상승 또는 저하, 비강염성 염증, 두개내 신생물, 경막내 주사, 간질발작 등에 의해 나타납니다. 두개내 신생물에 의한 두통은 초기에 약하고 간헐적이거나 점차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한결같이 무딘 통증을 보이게 되고 말기에는 지속적이고 전반적인 매우 심한 두통이 나타납니다. 두통은 하루 중 어느 때나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른 아침에 심하고 기침이나 몸을 앞으로 굽힐시 더욱 악화되며 구역과 구토가 흔한 증상입니다. 특히 시력의 이상, 보행 장애, 성격이나 의식의 변화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뇌의 영상학적 검사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간질발작에

의한 두통은 발작의 전조증상으로서 발작 후 나타날 수 있는데 대체로 갑자기 발생하고 부위는 미란성이거나 양측 측두부에 나타나며 두통이 수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고 구역 및 구토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발작이 있을 후에 기면 또는 수면이 뒤이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편두통과 구별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뇌파 검사상 명백한 이상이 있다면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질 또는 물질 사용 중단에 기인한 두통은 알코올, 산화질소, 글루타민산 소다(MSG), 코카인 등의 급성 사용 또는 노출에 의한 두통, 장기적인 약물 투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두통, 카페인이나 마약성 진통제 등의 사용 중단 후 나타나는 물질금단에 의해 두통입니다. 약물을 주 2회 이상 3개월을 초과하여 복용했을 때 이 기간 동안 새로운 두통

여·성·상·식

포천 가족·성 상담센터 이문환



Q 【어린이 성폭력 피해자 부모를 위한 지침서】

A 우리 아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A 어린 자녀가 성폭력피해를 입었을 때 대부분의 부모는 화가 나고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 가해자나 그 가족에게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자연스러

운 감정이지만 당신이나 자녀 모두에게 더 많은 문제를 가져오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침착하고 의연하게 자녀의 피해상황에 잘 대처를 한다면 자녀에게 닥친 위기상황을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로서 당신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A 당신의 자녀가 신체적 상해를 입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폭력 피해 경험은 어린이에게 커다란 정서적·심리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자녀와 그 피해사실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아이는 편안해하고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피해사실을 이해하려는 긍정적인 태도는 아이를 안심시키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어린이 성폭력은 당사자 자녀만 당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어린이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대체로 성폭력 피해의 약 30%가 어린이 피해입니다. 유아에서 만3세에 이르는 어린이들이 10명중 3명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의: 포천가족·성상담센터(031-542-3171)

세·무·상·담

세무사 박운중



Q 【2007년 개정 법인세법】 금년에 개정된 법인세법 중 중요한 개정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겠어요.

A 법인세법의 중요한 개정내용을 보면, 기관투자자와 일반법인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관투자자가 다른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금액에 대하여 90퍼센트의 익금불산입율을 적용하던 것을 일반법인과 동일한 수준인 3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지주회사의 전환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지주회사가 지분을 80퍼센트(자회사가 상장법인인 경우 40퍼센트)를 초과하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율을 2009년부터 9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그밖의 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율을 60퍼센트에서 2007년부터는 70퍼센트로, 2008년부터는 8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산업전문회사 및 해외사

원개발투자회사 등이 배당가능이익의 90퍼센트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였으며,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외국자회사의 지분율을 20퍼센트 이상에서 5퍼센트 이상으로 완화하였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해외부동산에 투자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납부세액 전액을 차감한 후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무이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25퍼센트에서 14퍼센트로 변경하여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무사 박운중 031-872-6116

AM 에어매트

침대문화의 혁명! 리더 에어쿠션 매트



사옥전경



아이에서!



물놀이용으로!



황광의 대표

솔레노이드

온열·음전위 안마 리듬 마사지

오늘 하루의 피로를 전문안마사 같은 안마매트 위에서 풀어보세요.

